

의안번호	제 185 호
의 결 연 월 일	2019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
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19년 5월 31일

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침

충청북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

의안
번호

185

제출연월일 : 2019년 5월 31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「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」이 전부개정(법률 제15526호, 2018.3.27. 공포, 2019.3.28. 시행)됨에 따라,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승강기 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○ 부품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(안 제2조)

-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승강기 안전부품에 대해 부품안전 인증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의 통관 전에 부품안전 인증의 면제신청서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제출.
-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「승강기안전관리법시행령」제18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임을 확인하면 부품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.

○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(안 제3조)

-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승강기에 대해 승강기안전인증 면제신청서를 통관 전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제출.
-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「승강기안전관리법시행령」제21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임을 확인하면 승강기 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.

○ 보고 (안 제5조)

-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부품안전인증 및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결과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함.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관계법령 발췌 : 붙임

충청북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승강기 안전관리법」 제12조제2호, 제18조제2호 및 제76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부품안전인증의 면제 확인) ① 「승강기 안전관리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2조제2호에 따라 부품안전인증(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해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모델별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부품안전인증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의 통관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부품안전인증 면제신청서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18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. 다만,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.

④ 제1항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이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에 해당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부품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.

제3조(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확인) ① 법 제18조제2호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[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에 대해 모델별 또는 승강기(모델이 정해지지 않은 승강기로 한정한다)별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]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승강기의 통관 전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승강기안전인증 면제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자는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. 다만,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.

④ 제1항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해당 승강기가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에 해당하면 별지 제4호서식의 부품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내주어야 한다.

제4조(수수료) 법 제76조제2항제2호·제3호 및 영 제62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.

제5조(보고) 공단은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면제 확인 결과를 다음 해 1월 31일 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수수료(제4조 관련)

구분	수수료
1. 부품안전인증의 면제 확인	가. 면제 확인 신청 수수료: 다음의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1) 현장심사 수수료: 심사비용 × 2명 × 심사일 2) 면제 확인서 발급 신청 수수료: 모델 1개당 해당 승강기안전부품 1개 수입가격의 10퍼센트의 금액으로 하되, 50,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나. 면제 확인서 재발급 신청 수수료: 4,000원
2.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확인	가. 면제 확인 신청 수수료: 다음의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1) 현장심사 수수료: 심사비용 × 2명 × 심사일 2) 면제 확인서 발급 신청 수수료: 모델 1개당 해당 승강기 1개 수입가격의 10퍼센트의 금액으로 하되, 50,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나. 면제 확인서 재발급 신청 수수료: 4,000원

비고: 제1호가목1) 및 제2호가목1)에 따른 심사비용은 「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」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 중 기계/설비 분야의 고급기술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.